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성길용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오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부터 제4조까지)
- 나.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 마. 오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 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 사. 지속가능발전 실행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민관협력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7월 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성길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1호
----------	-------

발의년월일 : 2022년 7월 7일

발의의원 : 성길용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전도현, 송진영,
전예슬 의원

□ 제안이유

-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오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 마. 오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 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 사. 지속가능발전 실행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민관협력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1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별첨 2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오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

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경제발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전략)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및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경기도의 기본전략
2. 제6조제5항에 따른 기본전략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오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전략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내용
2. 기본전략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예산 및 성과지표
3. 그 밖에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이 시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협의·조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산 및 성과지표의 경미한 변경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9조(조례·행정계획의 통보)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전(관계 행정기관 또는 부서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는 때)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와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관련 사항
4. 제6조제5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관련 사항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9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 관련 사항
7.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사항
8.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관련 사항

- 9. 법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0.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3. 그 밖에 시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의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자치·경제·환경 분야 담당 국장 및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남성 2명, 여성 2명)
2.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명(남성 2명, 여성 2명)
3.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 통념상

해측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자료는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안건 및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연구 등 의뢰)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관협력단체 또는 시민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2.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지속가능발전 홍보
4.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5.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6.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7. 국내·외 협력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도시·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정의·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

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2】

【지속가능발전목표】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
- 구 성 : 17가지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며, 아래의 분야를 포괄한다.
 - ▶ 인류의 보편적 문제 :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 ▶ 지구 환경 문제 :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 ▶ 경제 사회 문제 :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 17대 주요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증진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